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

■ 임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748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제21대 국회 논의 경과	4
2.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8
3.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기능 정비	19
4. 위령사업을 기념사업으로 개정 등	24
5.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특례 등	2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임호선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8. 12.
3. 회 부 일 : 2024. 8.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1. 10. 19.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국가의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보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들이 포함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보상에 대한 기준, 절차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보완입법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음.

이에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된 보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위원회의 업무 중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조 제6항 신설 등).
- 나.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처리 사항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보상금 및 실종선고 청구의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6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
- 다. 희생자 보상과 관련하여 보상기준, 청구권자 범위 및 심의·결정·지급 절차,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5까지 신설,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8까지 신설, 제12조 등).
- 라. 희생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이후 이 법 시행일 이전 수리된 희생자에 대한 혼인신고와 출생신고의 효력을 인정함(안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 신설).
- 마.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가 희생자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보상금등의 지급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또는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바. 실종신고 청구,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처리할 수 있
도록 함(안 제18조의3 신설).

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9조).

Ⅲ. 검토의견

1. 제21대 국회 논의 경과

노근리사건은 1950년 7월 25일부터 5일간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및 황간면 노근리 일대에서 미합중국 군인에 의해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임.

제16대 국회 국방위원회는 「노근리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특별법안」(의안번호 160065, 심규철의원 대표발의)을 심사하여 2004년 1월 8일 수정가결하였고, 2004년 2월 9일 「노근리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3월 5일 「노근리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었음.

제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28, 이장섭의원 대표발의)과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79, 임호선의의원 대표발의)」을 병합하여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한 바 있으며, 대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가. 국가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5항 및 제6조제5항).
- 다.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라.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노근리사건의 희생자심사를 완료하도록 함(안 제7조).
- 마. 노근리사건 조사 결과를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노근리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나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하도록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보호 규정을 마련함(안 제13조).
-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법인의 위령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희생자 및 유족에게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아. “개호”를 “간병”으로, “명기”를 “명확하게 기록”으로 개정하는 등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안 제10조 및 제15조).

또한, 제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결 시 국가는 제주4·3사건의 보상기준을 참조하여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방안을 강구하고,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법인이 시행하는 위령사업, 위령시설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령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음.

이후, 희생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351,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398,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등이 발의되어 법안심사를 거쳤으나 제21대 국회에서 입법에는 이르지 못하였음.

참고로, 노근리사건은 희생자심사가 완료되어 총 228명이 희생자로 인정받은 상황으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2023년 10월 제10차 위원회에서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보고서를 심의·의결하고 존속하고 있는 상태임.

<한국전쟁 전후 과거사 사건 보상금 등 지원현황>

구분	희생규모	지원사항(보상유형)				
		위령사업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기타
제주4·3 사건	14,871명 (사망·행불 14,314, 장애 222, 수형 335) ※ 희생자·유족 심사·결정 중	○	○ (사망·행불 9 천만원, 후유 장애·수 형 9 천 만 원 이하)	○ (희생자)	○ (희생자)	명예회복
여순사건	696명 (사망 561, 행불 134, 수형 1) ※ 희생자·유족 심사·결정 중	○	×	○ (희생자)	○ (희생자)	명예회복
노근리사건	228명 (사망 150, 행불 13, 부상 65)	○	×	○ (희생자)	×	명예회복
거창사건	934명(사망) ※사망자만 희생자로 인정	○	×	×	×	명예회복

* 희생규모는 24년 9월 말 기준 인원임

※ 자료: 행정안전부

2.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개정안은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들의 <u>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u>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명예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u>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u><신설></u> <u><신설></u>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보상금”이란 노근리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제10조의2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금을 말한다. 6. “보상금등”이란 보상금과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희생자 및 유족의 <u>명예회복</u> 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노근리사건을 교훈으로 평화와 인권 가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u><신설></u>	제3조(국가의 책무) ----- ----- <u>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u> ----- ----- ----- -----. 제10조의2(보상금) ①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사건 발생 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희생자의 일실회과 장기간의 보상 지연, 정신적 고통

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9천만원

2. 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9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② 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그 부상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살아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민법」 제997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의 「민법」을 준용한다.

④ 제3항의 상속인 중 배우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으로 결정된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사실상의 배우자가 희생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혼인하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으로 결정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 중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이 4촌 이내 방계혈족과 동순위로 보상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⑥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의 경우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보상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 경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⑦ 국가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상속인이 없는 희생자를 추념하기 위하여 희생자를 위무하는 사업,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의미를 고양하는 선양사업 및 공동체 회복사업 등 국내외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3(보상금의 신청) ① 위원회는 국내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제10조의2에 따른 보상금을 신청·접수할 수 있는 접수처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신청은 희생자의 생존 여부, 희생자결정일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그 순서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11조(재심의) ① (생 략)

② 희생자 및 유족은 제10조에 따

③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0조의2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접수처에 보상금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신청기간 등 보상금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4(심의·의결 등) ①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보상금 신청을 받은 실무위원회는 관련 증빙서류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5(결정서 송달) ① 실무위원회는 제10조의4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재심의)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상금등

른 의료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무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생략)

<신설>

<신설>

의-----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① 보상금등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지연 이자) ① 제10조의3에 따른 보상금의 신청을 위원회가 결정한 순서로 접수함에 따라 최초 신청접수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신청순서가 도래하는 신청인에게는 최초 신청접수 개시일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해당 순서의 신청접수 시작일까지 지연되는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보상금등을 지급한다. 다만,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신청이 지연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은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보상

	<u>금등 지급 청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정해진 기간까지 미지급 시 지연되는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다.</u>
<u><신 설></u>	<u>제11조의4(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u>
<u><신 설></u>	<u>제11조의5(조세 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u>
<u><신 설></u>	<u>제11조의6(결정전치주의) ① 제4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신고나 신청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 위원회가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위원회의 결정(재심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제11조의7(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u>

<신 설> 제12조(의료지원금의 환수) ① 정부는 이 법에 따른 <u>의료지원금</u>을 받	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보상은 노근리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노근리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자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차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노근리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의8(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가 있는 날부터 확정판결이 있는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 제12조(보상금등의 환수) ① ----- -----보상금등을-----
---	--

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u>의료지원금</u>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를 하는 경우에 <u>의료지원금</u>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환수할 수 있다.	----- ----- ----- -----. 1. -----<u>보상금</u>등의----- 2. (현행과 같음) ② -----<u>보상금</u>등을----- ----- ----- -----.
---	--

현행법에 따르면 희생자는 노근리사건으로 인한 사망자·행방불명자 또는 부상자로서 위원회에 의하여 노근리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인데, 생존한 희생자 중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간병 등이 필요한 경우 의료지원금을 지급 받았고, 보상금은 지급받지 않음.

<희생자 및 유족 결정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총계	희생자				유족	의료지원금 수령인 (액수)
		소계	사망	행불	후유 장애		
'05. 5.23(제2차 ^{위원회})	2,388	218	150	13	55	2,170	30(418)
'08.12.12(제6차 ^{위원회})	78	8	-	-	8	70	6(60)
'23. 4.10(제9차 ^{위원회})	2	2	-	-	2	-	2(12)
계	2,468	228	150	13	65	2,240	38(490)

※ 자료: 행정안전부

개정안은 사건발생 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일일이익과 장기간의 보상지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하여는 9천만원, 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장애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을 고려하여 9천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¹⁾

노근리사건은 이미 관련 위원회로부터 희생자 결정이 이루어졌으나 관련 입법의 부재로 보상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제주4·3사건의 경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이라 함) 개정(2022.01.11. 공포, 2022.04.12. 시행)으로 희생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등 4·3사건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할 때 보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제21대 국회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1)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보상금) ①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사건 발생 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희생자의 일일이익과 장기간의 보상 지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9천만원
2. 후유장애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9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3. 수형인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다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수형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을 지급한다.
 - 가. 수형 또는 구금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 결정 연도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에 수형 또는 구금 일수를 곱한 금액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다만, 제1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결 시 제주4·3사건의 보상기준을 참조하여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방안을 강구하라는 부대의견의 취지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따라서, 개정안의 입법화는 노근리사건의 특수성, 희생의 규모, 희생자 결정 후 보상 입법 부재로 인한 시간의 경과, 제21대 국회 「노근리사건법」 논의 경과, 「4·3사건법」의 보상금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5까지 및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8까지는 보상금 신청, 심의·의결, 결정서 송달, 신청인의 동의와 지급, 지연이자, 권리의 보호, 조세면제, 결정전치주의,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시효 등 원활한 보상 업무 수행을 위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보상금 관련 논의결과에 따라 반영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10조3제2항에 따른 보상금 신청순서 및 안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후순위신청에 대한 지연이자는 「4·3사건법」의 입법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노근리사건의 경우 희생자의 규모(총 228명)가 제주4·3사건 희생자의 규모(총 14,871명)에 비해 훨씬 적은 점을 감안할 때, 보상금 신청순서를 정하고 그에 따라 후순위 신청자에게 신청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할 실익은 적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미군에 의한 유사한 희생 사건과의 형평성을 위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이하 “진화위”라 한다)의 진실규명 결정 희생자(미군에 의한 희생자 포함)에 대한 보상을 주요 내용으로 발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24.8.12.)과 진화위에서 진실규명 중인 미군에 의한 피해 사건 다수에 대한 추이를 보며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며, 보상 진행 시 상당한 규모의 국가재정이 수반되므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재정 당국과의 협의 선행이 필요하고, 참전 미군에 의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사건발생 시기, 위법성 정도, 희생 규모 등 미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라는 개별사건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측면에서, 「4·3사건법」의 보상기준을 「노근리사건법」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기능 정비

개정안은 위원회 심의·의결사항과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고 함)의 처리 사항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보상금 지급 및 신청 등과 관련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과 <u>명예회복</u> 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 ----- <u>명예회복</u> <u>및 보상 등에</u> ----- ----- ----- -----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위령탑 건립 등 <u>위령사업</u> 에 관한 사항	3.----- <u>기념사업 및 국</u> <u>제교류사업 등에</u> -----
4. 5. (생략)	4. 5. (현행과 같음)
<신설>	6. <u>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u>
<신설>	7. 제16조의2에 따른 실종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희생자심사와 <u>명예회복</u>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 <u>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u> ----- -----

③ ~ ⑤ (생략)

<신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 (생략)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 3. (생략)

<신설>

<신설>

<신설>

③ ~ ⑥ (생략)

<신설>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중 보상금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둔다.

⑦ -----제6항까지에서-----

-----.

제6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10조의2에 따른 보상금의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5. 제16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6. 제16조의2에 따른 실종선고 청구의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실종선고의 청구, 보상금등의 지급을 처리하기 위하여 희생자, 증인, 참고인 등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

<신 설> 제19조(벌칙) 제18조제1항을 위반하	취하거나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제16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제16조의2에 따른 실종신고 청구, 보상금등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	--

<u>여 위원회·실무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나 자문기구의 구성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하나에 해당하는-----</u> ----- ----- ----- ----- -----. <u>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거나 보상금을 받게 한 사람</u> <u>2.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실무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나 자문기구의 구성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u> <u>②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u>
--	---

현행법은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및 ‘실종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보상금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두도

록 하는 한편,

실무위원회의 처리 사항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등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보상금의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실종선고 청구의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보상금 지급 및 신청 등과 관련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동 개정안 제10조의2(보상금), 제16조의2(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특례) 등의 심사경과에 따라 개정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은 관계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자료제출 요구 및 협조의무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보상금 등 관련 사항’은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신중검토가 필요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실종선고 청구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은 실태조사 등 연구용역을 통해 규모, 유형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4. 위령사업을 기념사업으로 개정 등

개정안은 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의 설립·운영 목적에 “기념사업”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대상을 “위령사업”에서 “기념사업 및 국제 교류협력사업”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4조(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법인의 <u>위령사업</u>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 ----- ----- -- <u>및 기념사업</u> 등을----- ----- <u>기념사업 및 국제 교류협력사업</u> -----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법인의 위령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의 설립·운영 목적에 “기념사업”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대상을 “위령사업”에서 “기념사업 및 국제 교류협력사업”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보임.

<현행 및 개정안의 비교>

	현행	개정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노근리사건 관련 법인 설립·운영 목적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기념사업
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사업	위령사업	기념사업 및 국제교류 협력사업

위령(慰靈)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함’의 의미, 기념(紀念/記念)은 ‘어떤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함’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²⁾ 기념의 범위에 위령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위령’은 현행법에 따른 희생자³⁾ 중 ‘노근리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에 국한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생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위로와 명예회복의 의미를 담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대상을 기념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 교류협력 사업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바, 이러한 내용은 한국전쟁 전후

2) 『표준국어사전』(국립국어원)

참고로, 동 사전에 의하면 “추모(追慕)”는 “죽은 사람을 그리며 생각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

3) 노근리사건과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부상자로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에 의하여 노근리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개정안 입법 시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임.

참고로, 노근리사건 관련 법인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음.

<노근리사건 관련 법인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

법인명 (설립연도)	설립목적	주요사업
(사)노근리사건 희생자유족회 (2006년)	노근리사건의 희생자와 그 유족 모임으로서,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사업, 추모사업, 합동위령제 등의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함.	1.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진상규명, 명예회복사업 2. 희생자의 추모 및 유족확인 사업 3. 추모공원의 성역화 사업 4. 세계평화와 인권신장을 위한 사업 5.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생활안정사업 6.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7. 지역사회 발전 및 화합 등을 위한 참여 8. 위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
(사)노근리 국제평화재단 (2010년)	노근리사건특별법에 의한 사업과 세계평화를 지향하고 인권신장을 도모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	1. 노근리 평화기념관 및 교육관 등 행정기관의 위탁사업 2. 노근리 사건 등 인권 및 평화 관련 문화·학술·교육사업 3. 세계평화를 지향하는 대외 교류에 관한 사업 4. 노근리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및 유족복지사업 5. 기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자료 : 충청북도 제출자료를 재구성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현행 법 제14조에 근거하여 기념사업과 국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개정 실익이 크지 않으며, 국제 교류협력사업은 유사 입법례도 없고 또한, 법인에 대한 지원사업 범위를 구체화(기념사업, 국제 교류협력사업 추가)하는 것은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5. 실종신고 청구에 대한 특례 등

개정안은 위원회가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노근리사건으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희생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이후 기존 사실혼 관계에 기초하여 이 법 시행일 이전 혼인신고 된 희생자와 배우자의 혼인관계를 인정하는 등의 특례를 두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16조의2(실종신고 청구에 대한 특례) ① 위원회는 「민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에 대하여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따른 실종선고의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이 법이 정한 특례 이외에 실종의 신고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절차에 따른다.
<u><신설></u>	제16조의3(인지청구의 특례) ① 노근리사건에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 제863조 및 제864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법률 제00000호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신 설>

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0000년 00월 00일을 말한다) 이후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법」 제865조에 따른 친생관계부존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6조의2에 따라 실종선고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6조의4(혼인신고등의 특례) ① 희생자의 사실상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이후 기존 사실혼 관계에 기초하여 이 법 시행일(법률 제00000호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0000년 00월 00일을 말한다) 이전에 수리된 희생자에 대한 혼인신고는 「민법」 제815조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희생자의 사실상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00000호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0000년 00월 00일을 말한다) 이전에 희생자의 친자로 출생신고된 사람에 대하여는 「민법」 제855조에도 불구하고 인지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현행법은 실종신고 청구에 대한 특례, 인지청구의 특례, 혼인신고 등의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음. 개정안은 현행법에 이러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4·3사건법」을 참조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4·3사건법」은 제20조(실종신고 청구에 대한 특례), 제21조(인지청구 등의 특례), 제21조의2(혼인신고의 특례), 제21조의3(입양신고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먼저, 안 제16조의2(실종신고 청구에 대한 특례)와 관련하여,

「민법」 제27조는 실종신고 청구 주체로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현행 실종신고 절차를 따르되 위원회가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에 대하여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4·3사건법」의 입법례를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유사 입법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실종신고 청구에 대한 특례) ① 위원회는 「민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에 대하여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따른 실종선고의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이 법이 정한 특례 이외에 실종의 신고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절차에 따른다.

다음으로, 안 제16조의3(인지청구의 특례)와 관련하여,

현행 「민법」은 친부 또는 친모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기 위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기존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 또는 모의 관계를 정정하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병행하도록 하고 있음.⁴⁾

개정안은 이러한 소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지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

4) 「민법」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면 소의 적격·인용 여부 등을 불문하고 친생관계부존재인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인지가 불분명함.

만약, 개정안처럼 인지청구의 소 제기만으로 친생관계부존재로 해석한다면 인지청구의 소가 부적격 판단 또는 기각될 경우에 기존의 법률상 가족관계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이 인지청구의 소가 인용되면 친생관계존부확인 소를 제기하지 않고 친생관계부존재인 것으로 간주하려는 취지라면 “인지청구의 소가 인용되는 경우에 친생관계부존재가 있는 것”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마지막으로, 안 제16조의4(혼인신고등의 특례)와 관련하여,

희생자 결정 과정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일이 확인되어 공부상 사망 일자가 혼인신고 이전으로 정정될 경우 현행 제도에 따라서는 기존의 혼인신고가 무효가 되고, 자녀와의 친자관계도 말소될 수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특례를 두어 혼인관계 및 친자관계 등 기왕의 가족관계 효력을 유지 시켜줄 필요성이 있음.⁵⁾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과거사 관련 사건의 가족관계 불일치

5) 안 제16조의4(혼인신고등의 특례)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1.11.29.)에도 포함된 개정사항이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과정에서 삭제되었음.

해결을 위한 입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4·3사건 연구용역⁶⁾을 진행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4·3사건법」이 개정된 바 있으므로, 개정안의 입법화는 개정된 「4·3사건법」을 참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은 친족·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실태조사(연구용역)를 통해 작성·정정 관련 수요 및 유형 등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근거로 관계기관(법무부, 법원행정처 등) 협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3

6) 제주4·3사건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